

감 사 보 고 서

세한대학교 총장

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

우리는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의 회계연도 정관상의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21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운영계산서·현금흐름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의 회계연도 정관상의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라 2021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2021년 4월 8일

감 사 인 최 동 진 (인)

